



학업성적처리 규정

규정번호	2-4-1
제정일자	2000. 3. 1.
개정일자	2024.3.20.
책임부서/팀·계	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에 따라 학업성적을 처리하고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① 이 규정은 학칙시행세칙 제35조에 의한 정기시험 및 기타의 결과로 얻어지는 학기말 학업성적에 대해 적용한다.

② 시험은 중간고사, 기말고사 및 그 외의 시험으로 구분하여 필답시험과 실기, 구술 및 과제물 작성 등으로 과목의 성격에 맞는 방법으로 시행한다.

③ 학업성적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, A학점 비율은 40% 이내로 한다. <2021.06.11. 개정><2022.04.21. 개정>

④ 전공심화과정, 계약학과, 교과목 평가 총 인원 20인 이하 및 1대1 강의 교과목의 경우 절대 평가를 할 수 있다. <2021.06.11. 개정>

⑤ “사회복지사 2급, 보육교사 2급 자격증” 취득 필수 요건 과목 등의 특정교과목에 대해서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성적평가 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. <2021.06.11. 개정>

⑥ 천재지변 및 기타 사유로 상대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교무위원회의결을 거쳐 최종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절대평가로 운영할 수 있다.<2012. 1. 16 ③항 신설, 2014.11.1. 개정, 2016.11.1.개정, ④,⑤항 신설, 2020.09.24.개정,⑥항 신설,20.12.15.개정>

제3조(성적의 평가) 학업성적은 교과목별로 하고 출석성적, 평소학업성적,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등을 종합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① 한 학기 교과목별 시간수의 4분의 1이상을 결석한 교과목은 낙제로 사정하고 “F”를 부여한다.

②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후 군 입대 휴학자의 성적평가는 중간고사 성적 및 평소학업성적을 참작하여 평가한다. <2009.7.6 개정>

제4조(성적의 표기방법) <삭제>평점표의 성적표기는 학칙 제29조에 따른 등급(A+, A°, B+, B°, C+, C°, D+, D°, F, P)으로 한다. <2019.11.14. 개정>

제5조(상대평가의 기준) <2009.7.6 개정(삭제)>

제6조(상대평가의 단위) <2009.7.6 개정(삭제)>

제7조(성적의 공시) 성적의 결과가 나오면 학기말 시험의 최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속 학과에서 3일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. <2009.7.6. 개정> <2012.1.16 개정>

제8조(성적보고 시한) ① 모든 학과목의 성적전표는 학기말시험 최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 <2009.7.6.개정> <2012.1.16 개정, 2014.11.1.개정, 2015.12.2. 개정><2021.8.20. 개정> <2023. 3. 30. 개정> <2024.3.20. 개정>

② 외래강사 담당과목의 성적에 대한 공시 및 제출은 소속 학과장이 책임지고 이행하여야 한다.

③ 제출된 성적전표에 공란인 학생은 무효로 간주한다. <2009.7.6 개정, 2014.11.1. 개정>

제9조(성적의 정정) ① <2009.7.6. 개정, 2015.12.2. 삭제>

② 성적공고 및 정정기간 내 성적이의신청은 성적 정정원 및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총장의 허가를 받은 후 정정할 수 있다. 단 정정기간 경과 후 발생된 성적정정은 허용하지 않는다. <2009.7.6. 개정,2012.1.16. 개정,2015.12.2. 개정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성적정정원

결 재	담 당	팀 장	처 장	총 장

성 명					
학 과 명		주 · 야 · 위탁	학년	학번	
교과목명					
성 적	당초				
정 정 사 유	변경				
위와 같이 성적을 정정하고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니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
20 . . .					
담당교수 : (인)					

- 첨부 : 1. 성적전표 사본 2부(정정 전, 후 각 1부)
 2. 성적인정 증빙과제 및 자료사본 1부(제출된 과제 이어야함)
 3. 성적이의신청서.